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김한규·한준호·문정복

민병덕 · 김종민 · 윤호중

장철민·백혜련·강훈식

한병도 · 문대림 · 김태년

이재정 • 위성곤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 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등). 법률 제 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희생자 및 유족을"을 "희생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제2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희생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임받은"을 "결정된 희생자의 유족을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2의2. 희생자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 본문 중 "제2조제3호"를 "제6조제2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조제3호"를 "제6조제2항제2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조제3호"를 "제6조제2항제2호의2"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의 유족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	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u>희생자 및 유족을</u>	<u>희생자를</u>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	
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희생자 및 유족</u> 의 심사·결	2. <u>희생자</u>
정에 관한 사항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u>위임받은</u> 사항을	<u>결정된 희생자의 유</u>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족을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위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2. (생략)

<신 설>

- 3. ~ 7.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16조(보상금) ① ~ ③ (생략)
 -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u>제2조</u> <u>제3호</u>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 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

<u>임받은</u>
②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희생자 유족의 심사·결
정에 관한 사항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2항 <u>제2호의2</u> -
⑤ <u>제6조</u>
제2항제2호 <u>의2</u>

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u>제2조</u> <u>제3호</u>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u>제2조</u> <u>제3호</u>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 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⑦ (생략)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u>제5조</u>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 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

6	•
<u>제2항제2호의2</u>	
⑦ (현행과 같음)	2-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및 제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2Cマ(그 의사법권보 등 0] =] -] \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①	
제5조 및 제6조	

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이 대한 보호법」 제24조제 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